

업종별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(제20조의2제4항 관련)

한 국 표 준 산 업 분 류	업 종	상시 근로자 수
C B F H J N Q	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300명
A D G I K M R	농업, 임업 및 어업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200명
E P S	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100명
L	부동산업 및 임대업	50명